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594

제출연월일: 2019. 12. 3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담당 신설, 이동,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
- 1) 기획예산실
- 가)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제9호)
- 2) 주민자치국: "통신" 삭제(안 제5조제2항제4호)
- 3) 복지경제국
 - 가) 복지정책, 희망복지, 통합조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제2항제1호)
 - 나) 경제정책, 산업진흥, 전통시장, 농업,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제2항제4호)
- 4) 안전도시국
 - 가) 안전정책 총괄, 재난관리, 통신관제,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,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2항제1호)
 - 나)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 관리, 건축·주택행정,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2항제5호)
 - 다) 공원관리, 녹지관리, 산림휴양,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제2항제6호)

20 (제220회-행정자치위제7차부록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45360호, 2019. 11. 21.)
- 라. 입법예고: '19. 11. 20. ~ 11. 25.(5일간, 의견 없음)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9호 중 "공보행정"을 "구정홍보"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"정보관리, 통신"을 "정보관리"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"생활지원"을 "복지정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경제정책, 산업진흥, 전통시장, 농업,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
제7조제2항제1호 중 "재난관리"를 "재난관리, 통신관제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도시디자인"을 "경관디자인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산림보호·녹지관리 및 공원관리"를 "녹지관리, 산림휴양, 정원정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행 제4조의2(기획예산실) 기획예산실장은 제4조의2(기획예산실) ----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_____ 1. ~ 8. (생략)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9. 구정홍보 -----제5조(주민자치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제5조(주민자치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(2)하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회계, 재산관리, 정보관리, 통신 등 4. ----- 정보관리-에 관한 사항 5. ~ 7. (생략) 5. ~ 7. (현행과 같음) 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(2) 하다. 1. 생활지원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 등 1. 복지정책, -----에 관한 사항 2. ~ 3. (생략)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경제정책, 산업진흥, 전통시장, 농 4. 지역경제활성화, 상·공업, 농·수산 업 등에 관한 사항 업,축산업 -----5. ~ 6. (생략) 5. ~ 6. (현행과 같음) 제7조(안전도시국에 두는 과) (1)(현행과 같음) 제7조(안전도시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하다. 1. 안전정책 총괄, 재난관리, 재해대책 1. ----- <u>재난관리, 통신관제,</u> -및 복구지원, 민방위 등에 관한 사 항 2. ~ 4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생략) 5. 경관디자인 -----5. 도시디자인 및 광고물관리, 건축· 주택행정,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처 6. ----- 녹지관리, 산림휴양, 정원 리 등에 관한 사항 6. 공원관리, 산림보호·녹지관리 및 정책 -----공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7. (현행과 같음) 7. (생략)

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법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 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 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 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4호
 - :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조직운영을 위한 담당 신설, 이동,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등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
- 그 개정 내용이 조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선언적 형식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

3. 작성자

○ 소 속: 기획예산실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
○ 이 름: 이 승 훈

○ 연락처: (052)290-3062